

의안번호	제 108 호
의결연월일	1999. 9. 17

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. 9. 6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9. 10

다. 상정일자 : 1999. 9. 16

제72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종합민원실장 : 황규열)

가. 폐지 이유

- 본 조례는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에서 지붕개량사업은 무이자, 주택개량사업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정하여져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함.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원용)

- 「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」는 1975. 8. 7 제정된 것으로 당시 “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”에 의거 농어촌주택사업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1980. 4. 23 “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”(조례 제577호) 전문 개정시 농어촌주택사업부문을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“예산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”를 폐지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「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」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이율은 “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”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“이율은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“자금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”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령(1988. 5. 21 이후 “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”임) 이므로 “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”를 개정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결의·답변 및 토론요지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